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전희정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정미 의원 외 11인

3. 제안이유

○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정의 공정성·객관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주요 대관사항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, 사용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유 제시를 명확히 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(안 제3조)

나. 사용허가의 제한(안 제4조)

다.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의2)

라. 위원회의 구성(안 제4조의3)

마. 위원장의 직무(안 제4조의4)

바. 회의(안 제4조의5)

사.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4조의6)

아. 사용허가의 취소·철회 등(안 제9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「행정기본법」 제17조 ~ 제19조
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~ 제24조

6. 검토의견

○ **본 조례안은**
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정의 공정성·객관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주요 대관사항의 심의를 거쳐치도록 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**검토 결과**

-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,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하여 대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이 조례 제2조의3(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)[1] 규정에 따르면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어 대관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추후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1) **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 제2조의3(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)** 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**따로 조례로 정한다.**